

언어 형태와 번역의 기능성: 법률 서식 한영번역의 예

주진국
(한국외대)

1. 서설

본 연구는 ‘바람직한 번역물은 목표텍스트의 소통기능에 합당한 번역’이라는 규범적(normative)이고 평가적(evaluative)인 명제를 기본 전제로 한다. 목표텍스트의 소통 기능은 텍스트 수용의 시공간, 수신대상자(addressee)의 기대, 원천텍스트의 소통 맥락과 기능 등 번역 맥락(translation context)¹⁾을 구성하는 변

1) 맥락(context)이라는 술어가 갖는 의미는 문헌 저자에 따라 다양하다. 바로와 휴즈(Varó and Hughes)는 특정 발화를 내포하는 환경의 다양한 층위를 맥락이라 정의한다. 그 개념적 범주에는 ‘발화 맥락(context of utterance)’이라 하는 발화의 물리적, 시간적 환경, ‘코텍스트(co-text)’라 하는 동일 텍스트 내 인접 어휘나 문장들, 그리고 ‘언어 외적 환경’이라 할 수 있는 특정 공동체의 특징적 습관, 기대, 관습, 가치 등이 포함된다(37). 한편 번역 맥락(translation context)은 “번역물과 의미 있게 관련된 시공간적 환경의 모든 것”을 의미하며 목표텍스트의 제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Williams

수들의 총합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에서 본고의 논지 전개상 ‘수신대상자’는 노르트(Nord)의 구분을 좇아 “실제로 해당 텍스트를 읽거나 듣는 개인, 단체, 혹은 기관”을 의미하는 ‘수신자(receiver)’와 구분하여 텍스트 생산자가 “궁극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수신자”라는 의미로 사용한다(22).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에 사용된 ‘수신대상자’라는 술어는 세이저(Sager)가 구분한 일차독자(primary reader)의 개념과 유사하다(1997: 28). 따라서 ‘수신대상자’는, 텍스트를 읽는 모든 자(者)라는 의미에서 그 의미의 외연이 광범한 ‘독자(reader)’와 특정 목적과 쓰임새에 따라 텍스트를 사용하는 ‘사용자(user)’와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법률서식의 경우 원천텍스트 생산자와 목표텍스트 사용자는 모두 주무관청이다. 해당 관청은 외국인 민원인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원하는 서비스를 그 관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목표텍스트를 사용한다. 이러한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텍스트 생산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텍스트를 생산하였으며, 누구의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하는가의 관점에서 소통 기능에 합당한 번역이 무엇인지 논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목표텍스트의 소통 기능이 번역의 이러한 맥락적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면, 그러한 소통 기능에 따라 목표텍스트에 구체적인 존재 형식의 틀을 부여하는 것은 목표문화 구성원들의 표준화되고 관습화된 의사소통의 관행, 즉 장르 관습(genre conventions)이다. 장르 관습은 특정 종류의 텍스트가 특정 환경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능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때 갖게 되는 관습적 형태를 의미한다(Nord: 53). 따라서 텍스트의 생산자는 장르 관습이 부여한 형태적 틀에 따라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고, 수신자는 그와 같은 형태적 틀에 의거하여 텍스트 생산자의 전언을 수용한다. 장르 관습이 특정 문화 구성원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텍스트 구조와 어떤 언어적 형태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지에 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목표텍스트의 생산자인 번역자는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해당 목표문화 장르 관습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인식을 토대로 소규모의 병렬텍스트(parallel texts)²⁾

and Chesterman, 정연일 옮김 110).

2) 병렬텍스트란 “동일한 (혹은 매우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으로 독립적인 두 생산물(products)”(Snell-Hornby: 86)을 의미한다. 병렬텍스트는 이 외에도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컨대 두 텍스트 중 한 텍스트가 다른 독립적인 텍스

표본을 참고하여 언어 형태와 소통 기능 간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어 법률 서식과 이에 대한 영어 번역물을 비판적 견지에서 살펴보았다.

2. 연구 의의 및 방법

장르는 “사회적 계기(social occasion)” (Hatim and Mason 71)를 반영하는 관습화된 텍스트 형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 상황에서 텍스트 생산자가 특정 소통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발화가 어떤 어휘 항목을 취하며 어떤 형태를 띠는지는 해당 장르의 관습에 의존하며, 이러한 장르 관습은 보다 상위의 층위에서 사회적 관습에 종속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원천텍스트의 장르에 대응되는 목표문화의 원문 텍스트(original texts)에 구현된 소통 방식을 학습하는 일은 번역 실무, 비평, 연구, 교육 등 번역과 관련한 제 분야에서 목표텍스트의 지향점을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스넬-혼비(Snell-Hornby)가 말한 바와 같이 원천문화의 특정 장르에 대응되는 목표문화의 장르가 흔히 하나의 “모범적인 번역(model translation)”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일한 소통 기능을 갖는 원천문화와 목표문화의 장르가 관습적 형태의 차이를 보이는 특수한 영역의 번역일 경우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그러한 차이가 최악의 경우 ‘소통의 실패’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법률서식의 한영번역을 이와 같은 특수한 영역의 번역으로 간주하고 연구대상 텍스트의 한영번역이 갖는 기능상의 문제점을 병렬텍스트의 대조 분석을 통해 찾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 원천텍스트는 검찰청 민원 서식인 「민원신청서」, 「압수물가환부신청서」, 그리고 「압수물가환부신청서」의 부속 텍스트인 「이의 신청 안내」이며, 목표텍스트는 이에 대한 영어 번역물이다. 동 번역물은 현재 검찰청이 영어권 외국인 민원인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위 세 서식 모두 원천텍스트의 거시구조(macro-structure)³⁾와 레이아웃(layout)을 유지한 채 영어로 번역한

트의 번역인 경우와 두 텍스트가 나란히 (즉 동시에) 생산된 텍스트이면서 서로 번역 등가적인 텍스트(translation equivalent texts)인 경우에도 병렬텍스트라는 술어를 사용한다(Shuttleworth and Cowie 120 참조).

3) 거시구조의 차이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모든 텍스트에서 관습화 혹은 제도화되어 나

것이며, 번역자는 미상이다. 본 연구는 분석 대상 텍스트에 대하여 번역의 맥락을 역(逆)으로 재구성하여 원천텍스트와 목표텍스트의 생산 맥락의 차이는 무엇이며 이것이 번역 목적과 전략에 대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였다.

이 세 서식 생산자의 소통 의도와 이에 대한 영어 번역물의 소통 기능상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활용한 병렬텍스트는 ‘신청서’라는 제목이 달린 한국어 서식 30종과 ‘신청서’에 대응되는 여러 가지 영어 표현을 제목으로 하는 38종의 미국 연방 정부 서식으로 구성되었다. 텍스트의 생산주체는 한국 서식의 경우 검찰청, 법원, 법무부이며, 미국 서식은 법원과 법무부이다. 병렬텍스트의 영어 서식이 미국의 연방 법률 서식이라는 점과 관련한 정당성은 최근 수년간 국내 외국인 범죄 국가별 비율에서 미국인 범죄자의 수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으며,⁴⁾ 미국의 서식은 인터넷을 통한 자료 입수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본고에서 병렬텍스트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전자 말뭉치를 활용한 것이 아니며 방대한 분량의 말뭉치로 구성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본고의 목적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통 맥락에서 양문화권의 구성원이 어떠한 관습적 제약에 노출되며, 이것이 번역에 대해 갖는 함의는 무엇인지를 소규모 사례연구를 통해 생각해 보는 데 있다.

위와 같은 목적으로 본고는 장르 관습을 크게 어휘 선택의 관습과 문체 관습으로 구분하였다. 장르 관습이 문체를 결정하고 문체에 따라 어휘 선택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측면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어휘 선

타난다. 예컨대 미국의 법조문이 US CODE TITLE 26 > Subtitle A > CHAPTER 1 > Subchapter F > PART I > Section > Subsection > Paragraph > Subparagraph의 구조를 갖는 반면, 한국의 법령 체계가 (편), 장, 절, (관), 조, 항, 호, 목의 순서로 구성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국의 상품에 붙은 라벨이 특정 문구를 특정 위치에 삽입하도록 법이 요구한다면, 미국의 상품은 이와 비슷한 문구를 다른 어떤 특정 위치에 요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어 법률 서식과 예컨대 미국의 법률 서식은 그 텍스트 구조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4) 「대검찰청 연구과제 보고서」(2008)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 미국은 2008년을 제외하고 범죄자수가 중국 다음으로 많았다. 각 해의 전체 범죄자수에서 미국인 범죄자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9.9퍼센트(2005년), 7.9퍼센트(2006년), 6.8퍼센트(2007년), 6.0퍼센트(2008)였다.

택의 관습에서는 특정 어휘가 양 문화권의 시스템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 또는 지위를 중심으로 원천텍스트 어휘와 번역 텍스트 어휘의 기능적 동가성(functional equivalence)이 확보되는지의 문제만을 논의하였고, 구(句)와 문장 사용의 관습과 요청문의 문체 관습을 통해 각각 문장과 구 활용에 있어서의 차이점과 요청문의 문체 관습을 비교하고 번역물의 기능상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 중 특별히 요청문을 대조 분석한 이유는 번역 텍스트에서 명령과 요청의 화행(speech acts)(Yule 47-56)을 수행하는 문장과 구에 대한 화행 분석의 오류가 흔히 눈에 띄는 점과, 동일한 화행을 수행하는 문장과 구가 양 문화권의 텍스트에서 서로 다른 형태적 특성을 띠는 경우가 요청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아래의 예1은 한국어 서식에서 소통 기능이 ‘부정의 명령(negative command)’인 문장에 대응되는 영어 서식 언어의 관습적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예1)

한국어: 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영어: For Official [Court/USCIS] Use Only

또 아래 예2와 같이 한국어 표현이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의 기능이 강조된 것과 달리 영어 서식의 표현은 ‘허가(You may-)’의 기능이 두드러지는 예도 발견할 수 있다.

예2)

한국어: 벌과금을 아래 납부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You may use any of the following methods to

위의 예1과 예2에 나타난 바와 같은 문체적 관습의 차이뿐만 아니라 번역자는 텍스트의 거시구조 및 미시구조가 주는 공간의 제약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예2의 한국어 원문을 번역할 때 이러한 제약이 있다면 번역자는 간결한 명령형의 활용 가치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래에 수록한 번역 예들은 통사적인 오류를 포함하는 것들도 있으며, 논자(論者)와 논점에 따라 그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목표문화의 대응 장르를 참고하여 오류 여부의 판단보다는 주로 의사소통과 관련한 기능성(functionality)의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해당 번역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런 이유로 사소한 통사적 오류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편이상 표(table) 양식으로 되어 있는 원천텍스트 요소는 그 문구만을 옮겨 놓았다.

3. 번역 상황에 따른 제약

한국어 법률 서식의 번역 목적은 국내에 거주(居所)를 둔 영어권 외국인이 한국 공공기관에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원하는 바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텍스트의 사용자는 주무관청이며, 원천텍스트와 목표텍스트의 사용자는 동일하다. 주무관청은 해당 텍스트에 ‘민원 신청의 형식적 완성’이라는 소통 목적을 가지며, ‘기재,’ ‘서약,’ ‘제출’ 등의 구체적인 언표 달성 효과(perlocutionary effect)를 기대한다. 이러한 번역 맥락의 특징들은 예컨대 국내의 소설 등을 외국의 잠재적 독자를 위해 번역하거나 한국의 관광 명소에 관한 홍보 자료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상황과 비교할 때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번역물의 소통 맥락이 원천텍스트의 소통 맥락과 상이한 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화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 서식 번역물은 수용 장소가 한국이며 준거 제도도 한국의 제도라는 점에서 번역 상황과 관련한 특징을 표1과 같이 번역의 제약(constraints)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표1) 원천텍스트 및 목표텍스트 생산 맥락의 동일성 여부

텍스트 생산의 맥락 변수	원천텍스트와 목표텍스트 맥락 변수의 동일성 여부
(의도된) 기능	동일(수신대상자의 수행 효과를 통한 ‘신청’ 형식의 완성)
수신대상자	상이(내국인 민원인 vs. 국내에 거소를 둔 영미 사용 외국인 민원인)
수용 장소	동일(한국)
수용 시간	동일(현재)
장르/유형	동일(법률 서식/공문서)
준거법 및 관련 제도	동일(한국 법률 및 제도)
텍스트의 거시/미시구조	동일(표 형식 +부속텍스트)

첫 번째 제약은 원천텍스트의 거시구조 및 레이아웃이 목표텍스트에 그대로 재현되면서 발생하는 공간적 제약이다. 텍스트 구조의 차이는 한국어와 영어 원문텍스트의 대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문체 관습의 차이와 많은 관련성이 있다. 비교적 공간을 넓게 사용하고 활자가 많은 경향을 보이는 미국 연방정부 서식과 달리 한국어 서식의 경우 표 형식이 대부분이거나 ‘기재될 사항’의 본질을 직접 요구하는 형태가 많다. 이에 반하여 미국 연방정부 서식은 수신대상자의 입장에서 진술하는 형식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많은 서식에서 발견된다(표2 참조). 그러나 법률 서식의 번역 상황에서 번역자가 텍스트 거시구조를 변경할 권한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어 원천텍스트의 거시구조는 번역자에게 목표문화의 소통 관습을 존중하면서도 간결한 언어 형태를 요구한다.

계약은 앞서 언급한 양 문화권 원문텍스트에 나타난 표현 형식의 차이점과 함께 목표텍스트의 기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예측된 번역상의 몇 가지 특징은 번역 과정에 제약으로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단서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이러한 번역상의 제약을 토대로 아래에서 법률 서식 한영 번역의 실패를 살펴보았다.

4. 법률 서식 한영 번역물에 대한 기능적 관점의 고찰

4.1. 어휘 선택의 관습과 소통맥락

연구에 사용된 검찰청의 민원 서식은 민원인이 각종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고 민원사무의 처리를 요청하기 위한 절차적 과정이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러한 서식들은 공문서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광의의 법률 텍스트로도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원천텍스트에 사용된 어휘는 한자어와 법률 용어가 주종을 이루며, 세이저의 구분을 원용하면, 일반 언어 어휘(*general language words*)보다는 특수 어휘 항목(*special lexical items*)⁵⁾이 많다. 아래에서는 번역물에 사용된 어휘를 살펴보고, 목표문화의 38개 원문 텍스트의 분석을 통해 목표문화 서식에서 관공서와 민원인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소통 맥락에서 특정 상황에 적합한 어휘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다. 아래의 예3은 원천텍스트인 「민원신청서」의 서식 제목과 이에 대한 영어 번역이다.

예3)

ST: 민원신청서

TT: Application for Civil Appeal

5) 세이저는 “그 사용 영역, 즉 특수한 주제에 관한 소통 상황에서 지시적 의미 (*referential meaning*) 이외의 의미가 없는” 어휘를 특수 어휘 항목(*special lexical items*)로 구분한다(Sager 1990 40). 예컨대 본 연구에 사용된 원천텍스트에서 ‘권한,’ ‘위임,’ ‘고소’ 등의 어휘들은 소통 맥락상 그 의미가 지시적 의미로 고정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정의된 ‘민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민원(民願): 주민이 행정 기관에 대하여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일

그러나 미국 서식에서 “civil appeal”은 민사소송과 관련한 결정이나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어휘이므로⁶⁾ “Application for Civil Appeal”은 우리말의 ‘항소장’과 유사한 텍스트 기능을 갖는 서식으로 오해될 소지가 많다. 예컨대 한 상소심 변호사(appellate attorney)의 개인 블로그에는 아래 예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문구가 자주 나타난다.

The Appeals Court, which currently is comprised of 25 judges, hears most civil and criminal appeals from the Trial Court...

(<http://massachusettsappellateattorney.com/?p=173>)

따라서 “civil appeal”은 법률적 맥락에서 ‘민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연을 갖는 어휘가 아니므로 목표텍스트에 기대되는 소통 기능을 원활히 수행한다고 볼 수 없다. 이 경우 원천텍스트의 생산 맥락과 코텍스트를 고려하여 ‘민원’의 개념이 적용되는 구체적 범위에 속하는 구체적 개체를 나타내는 어휘 중에서 ‘민원’의 대응어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 텍스트는 주로 각종 증명서와 민원 업무의 처리를 요청하는 데 사용된다는 기능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한다면 “(issuance of) certificates and services”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서식의 제목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고려할 점은 ‘신청서’라는 원천텍스트 어휘와 이에 대한 목표문화의 잠재적 대응어의 관계이다. 한국어 서식의 경우 민원 업무의 처리를 요청하는 절차적 기능을 하는 대다수 서식의 제목은 ‘신청서’⁷⁾이다. 반면 영어 서식의 경우 신청하는 민원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application,” “request,” “petition,” “claim,” “motion” 등이 사용되기 때문에 ‘신청서’와 잠재적 영어 대응어 간에는 맥락 의존적인 일대다(one-to-many)의 관계

6) “Civil Appeal Information”, “Civil Appeal Statement”, “Civil Appeal Bond”, “Notice of Civil Appeal” 등을 제목으로 하는 미국 서식을 참고하였다.

7) 극히 소수의 서식에서 ‘신청원’ 혹은 ‘청구서’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가 성립한다. 뿐만 아니라 ‘Notice of Appeal’이나 ‘Request for Trial’이라는 서식 제목은 한국 서식의 ‘이의신청서’ 또는 ‘소장(訴狀)’의 개념과 대응된다. 이러한 예를 통해 소통 맥락과 양 문화권의 제도를 무시한 무조건적 일대일 어휘 치환은 번역결과물의 기능성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목표문화의 원문 텍스트에 사용된 ‘application’은 승인 또는 인허가 요청과 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과 관련하여 사용되며, ‘request’는 주로 민원 서비스의 처리와 관련하여, 그리고 ‘petition’은 고충 혹은 불만과 관련한 ‘구제 혹은 시정’ 요청과 관련이 있다. 이에 반하여 타인에 대하여 금전이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혹은 이와 관련한 강제적인 법의 집행을 구하는 법적 행위와 관련한 신청의 경우 그 대응어는 ‘claim’이 적절하며, 절차적 문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구할 때 사용되는 어휘는 ‘motion’이다. 이러한 잠재적 대응어 중 어떠한 어휘가 선택되어야 하는지는 맥락과 소통 기능에 의존한다. 이와 같은 잠재적 대응어가 사용된 코텍스트의 예를 정리하면 표3과 같다.

표3) ‘신청서’의 잠재적 대응어가 사용된 영어 원문텍스트 제목의 예

Application	<u>Application</u> for Certificate of Citizenship <u>Application</u>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Change of Correspondence Address <u>Application</u> <u>Application</u> For Admission To Practice
Request	<u>Request</u> For Examination Of Report Filed By A Judicial Officer Or Judicial Employee <u>Request</u> For Withdrawal As Attorney Or Agent And Change Of Correspondence Address <u>Request</u> For Premium Processing Service <u>Request</u> For Customer Number Data Change
Petition	<u>Petition</u> for Extension of Time Under 37 CFR 1.136(a) <u>Petition</u> for Revival of an Application For Patent Abandoned Unavoidably under 37 CFR 1.137(a) <u>Petition</u> for Relief From a Conviction or Sentence
Claim	<u>Claims</u> For Hourly Compensation And Expense Reimbursement Advice To Council <u>Claim</u> For Compensation <u>Claim</u> For Medical Reimbursement <u>Claim</u> For Benefits Under Energy Employees Occupational Illness Compensation Program Act
Motion	<u>Motion</u> for Waiver of Fees <u>Motion</u> And Affidavit For Permission To Appeal In Forma Pauperis <u>Motion</u> For Order Authorizing District Court To Consider Second Or Successive Application For Relief <u>Motion</u> Of Official Court Reporter For Enlargement Of Time To Prepare Transcript
Notice	<u>Notice</u> of Appeal

아래의 예4는 한국어 서식 「이의 신청 안내」에 사용된 법률 용어 ‘불복’과 ‘이의’의 텍스트 내적 맥락을 보여준다.

예4)

ST: 검사의 가환부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가환부 불허통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TT: In case where there is an application for **dissatisfaction** against the disapproval of the prosecutor on the application for the provisional restoration of the confiscated articles, it is possible to raising an **objection** within three (3) days from the date receiving the notice of disapproval.⁸⁾

예4에서 ‘불복’ 혹은 ‘이의’의 의미는 재판 결과뿐만 아니라 행정기관과 사법기관, 혹은 모종의 권위를 갖는 기타 단체의 공식적인 결정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행위이며, 그러한 결정의 주체와 관련한 맥락에 따라 항소, 상고, 상소의 의미를 포괄하는 외연을 갖는다. 이에 대한 대응 표현은 이와 같은 원천 텍스트의 소통 맥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표문화의 소통 맥락에서 사용되는 어휘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선택되어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제도나 체계가 양 문화권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번역어로 선택된 ‘dissatisfaction’과 ‘objection’의 경우 원천 텍스트에 반영된 행정적, 사법적 절차와 관련한 제도에 대응되는 목표문화의 제도를 일컫는 ‘appeal’에 비할 때 그 가능성이 저하된다.

4.2. 구(句) 및 문장 사용의 관습과

수신대상자의 명시(addressee identification)

한국의 법률 서식은 아래 예5와 같이 흔히 표 형식을 취하며, 기재 사항의 속성 또는 본질을 나타내는 짧은 구(句) 형태가 ‘질문’의 화행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8) 예2의 원천텍스트 예문과 번역 실례에 대한 또 다른 논점은 이하 단원에서 언급한다.

예5)

손해배상금수령여부	유
-----------	---

반면 미국 연방정부 서식의 경우는 이러한 양식과 더불어 의문형이나 또는 진술형의 형식이 흔히 조합되어 나타난다. 물론 텍스트의 구조가 어떤 형태를 띠는가는 서식의 기능과 텍스트 생산자인 주무관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진술형 또는 의문형 문장으로 표현된 영어 서식의 문체적 관습의 예는 예6과 같다.

예6)

- a. Do you desire oral argument before the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Yes No
- b. My present true name is:
- c. I first arrived in the United States under the name of: (Last, First, Middle)

의문형 문장으로 표현된 예6의 a는 예5의 한국어 서식과 형태적 대조를 이루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갖는 서식에서 양 문화권의 문체 관습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 준다. 이러한 형태적 차이는 본질적으로 예5의 한국어 표현이 ‘질문’의 화행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5의 언어 형태를 문장 형태로 변환하여 번역할 경우 번역의 기능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예6의 b와 c의 경우는 텍스트 수신자가 화자(speaker)가 되어 사실을 진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텍스트의 수신대상자는 2인칭 대신 1인칭으로 명시되었다. 이러한 문장형의 활용이 많은 영어 서식은 당연히 텍스트의 수신대상자를 명시하는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수신대상자를 지시하는 표현은 ‘신청’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applicant,’ ‘petitioner,’ ‘claimant,’ ‘requester’ 등 다양하다(표4 참조). 물론 이 경우 특정 인칭은 동일한 텍스트 내에서 사용될 때 일관성을 보인다. 또한 2인칭의 사용도 흔히 발견되며 ‘명령’ 또는 ‘의무’와 관련한 텍스트 생산자의 소통 의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민원 신청인의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공란의 ‘신청인’에 해당하는 대응 표현으로 흔히

‘Information about You’라는 구가 사용되는 경우를 볼 수 있으며, 안내 문구에도 ‘You must complete the Proof of Service’와 같은 형태가 많다.

표4) 한국어 서식과 영어 서식의 수신대상자 지칭 표현

한국어 서식	영어 서식
신청인, 민원인	You, I, Applicant, Petitioner, Requester, Claimant
대리인	Preparer

이와 같은 이유로 좀처럼 수신대상자를 명시하지 않는 표현 관습⁹⁾과 구의 형식을 선호하는 한국어 서식의 언어적 관습에 매몰되어 어휘의 단순 치환 방식을 번역 전략으로 취할 경우 목표텍스트의 기능성은 저하되기 쉽다. 위에서 살펴본 문체 관습의 차이를 기초로 예6의 a, b, c는 한국어 서식에서 아래의 예7과 같은 형태를 취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예7)

- a. 이민항소위원회 구두 심리 희망 여부: 예
- b. 현재의 실명(實名):
- c. 입국 시 사용한 실명:

위와 같은 병렬텍스트의 분석 결과를 아래 「민원신청서」의 번역 예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예8의 원천텍스트는 표에 기재된 것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번역자는 텍스트 구조의 특징에 따른 공간적 제약을 받는다.

예8)

- ST: **사건과의 관계:** 피의자 고소인 피해자
- TT: **Relationship with the case:** suspect plaintiff victim

9) 안상철, 최인철 (263)에 따르면 한국어의 경우 2인칭 대명사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빈도가 영어에 비해 낮다.

예8의 목표텍스트는 원천텍스트 어휘인 ‘사건’ 및 ‘관계’에 대한 기계적 어휘 치환 방식으로 번역되었다. 번역자는 ‘사건과의 관계’를 번역하면서 코텍스트(‘피의자, 고소인, 피해자’와 아래 제시된 민원의 종류)와 소통 행위가 발생하는 장소적 맥락(검찰청)에서 번역의 지향점에 대한 단서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은 암시적 요소로 전환하여도 소통 맥락상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피의자, 고소인, 피해자라는 어휘가 사건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이 텍스트가 ‘검찰청’에서 사건과 관련한 증명서 및 처분을 요청하는 문서이기 때문이다. 또한 논리적으로 볼 때 상기 원천텍스트를 영어로 번역할 경우 ‘피의자, 고소인, 피해자’는 ‘관계’보다는 신청인의 ‘자격(filing status)’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관계 = 피의자’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으나 ‘신청인 = 피의자 혹은 고소인 혹은 피해자’의 관계는 성립한다. 따라서 텍스트의 수신대상자를 명시하는 목표문화 서식의 장르 관습을 응용하고 공간적 제약을 고려할 때 예9와 같은 번역이 가능하다.

예9)

Applicant's[Your] (filing) Status (in relation to the case): suspect
 plaintiff victim

또한 목표 문화의 문체 관습을 응용하여 의문형과 진술형으로 이를 재구성할 수 있으며, 그 예는 각각 아래 예10의 a, b, c와 같다.

예10)

- a. What is your (filing) status?: suspect plaintiff victim
 b. Applicant is: suspect plaintiff victim
 c. I am: suspect plaintiff victim

결론적으로 위 예에서 텍스트 구조의 제약인 공간 문제를 고려하여 간결한 표현이 우선시 된다면 예10의 b 혹은 c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아래 예11의 「민원신청서」번역 사례는 보기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예8과 유사하며 마찬가지로 목표문화의 장르 관습에 따른 경

우 번역의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는 예이다.

예11)

ST: **신청 민원**: 출국가능사실증명 사건처분결과증명 불기소이
유통지.....

TT: Type of requested civil service:...

예11의 목표텍스트도 수신대상자를 명시하는 표현은 없다. 법률적 맥락과 행정적 맥락에서 ‘civil service’가 공무원 집단 혹은 공직(公職)을 가리키는 것으로 흔히 사용된다는 어휘적 문제점을 차치하고, 번역자는 예11에서도 한국 서식의 언어 관습에 목표텍스트를 맞추어 ‘신청인’을 명시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을 요청하기 위한 것인가?’ 혹은 ‘신청인이 요청하는 민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화행을 수행하는 표현은 한국 서식의 관습에 맞출 경우 ‘Type of application’이 텍스트 구조의 제약을 극복하는 더 좋은 전략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간의 제약을 고려하지 않고 신청인을 언급하는 경우 ‘Type of service you are requesting is: -’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예11의 경우 전 단원에서 다룬 어휘 관습과 문체 관습의 측면 모두를 감안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예11과 같이 복수의 보기가 주어지고 민원인이 대답을 선택하도록 하는 유형은 영어 서식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영어 서식의 한 예로서 수록한 아래 예12의 상황은 예11의 상황에 거의 정확하게 대응되며, 이로부터 또 한 가지의 번역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

예12)

Type of Application
I hereby apply for:
a. <input type="checkbox"/> New Certificate of Citizenship
b. <input type="checkbox"/> New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c. <input type="checkbox"/> New Certificate of Repatriation

이제까지 살펴본 번역 실례들이 구(句) 형태의 원천텍스트 요소의 영어 번

역에서 번역자가 원천문화 장르의 문체 관습에 매몰되어 단어 대 단어 치환 방식 번역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야기된 기능상의 문제라면, 문장 형태에서 수신 대상자의 명시와 관련한 원천문화 장르 관습이 번역결과물의 기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다. 아래의 예13은 어휘 선택과 관련하여 예4에서 살펴 본 「이의 신청 안내」의 번역 예를 재차 수록한 것이다.

예13)

ST: 검사의 가환부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가환부 불허통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TT: In case where **there is** an application for dissatisfaction against the disapproval of the prosecutor on the application for the provisional restoration of the confiscated articles, **it is possible to** raising an objection within three (3) days from the date receiving the notice of disapproval

예13에서 번역자가 ‘there is -’ 구성과 ‘it is possible to -’ 구성을 선택한 것은 수신대상자가 명시되지 않는 한국어 서식의 문체 관습을 영어에 적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there is -’ 구성의 경우 행위 주체가 불명확하며 텍스트 수신자의 ‘의지’를 표현하는 원천텍스트의 담론 기능(discourse function)이 약화되었다. 마찬가지로 ‘it is possible to -’ 구성도 행위 주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능력,’ ‘허가,’ ‘가능’에 모두 사용되는 원천텍스트의 ‘-할 수 있다’가 목표 텍스트에서 ‘가능’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치환되었다. 영어 법률 서식은 텍스트의 모든 언어적 구성 요소에서 표4에 나타난 3인칭 및 2인칭 표현을 사용하여 수신대상자를 명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와 같은 장르 관습을 적용하면 ‘there is -’ 구성과 ‘it is possible to -’ 구성 대신 각각 예14의 a 및 b와 같은 형태를 취하는 것이 소통 기능을 강화하는 한 방법일 수 있다.

예14)

a. **If you want to** appeal the prosecution's decision to disapprove....

b. **you may** file an appeal within....

이제까지 위에 수록한 번역의 실례를 통해 원천텍스트의 언어 형태를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의 기능상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번역 실례들은 원천텍스트 요소와 목표텍스트 요소가 일대일 대응 관계를 형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고려되지 않은 번역 예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구(句)는 모두 구로 번역되었고 수신대상자가 명시되지 않는 한국어 관습이 영어 번역물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아래에서 살펴볼 요청문의 번역에서도 두드러진다.

4.3. 요청문의 문체 관습

텍스트 생산자가 의도한 ‘명령’ 혹은 ‘요청’의 소통 의도는 요청문이나 일부 요소가 생략된 요청문의 구성을 통해 구체화된다. 한국어 서식에서 긍정의 요청문은 문장의 종결형에 따라 크게 합쇼체형, 해라체형, 명사형 어미형, 의존명사형, 행위명사 종결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래의 예와 같이 ‘안내’ 혹은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을 갖는 부속 텍스트에서 완전한 문장이 사용될 경우 합쇼체의 종결형이 사용되는 경우가 빈도 상 가장 많았다. 합쇼체형의 요청문은 예15와 같이 ‘-하여야(해야) 합니다,’ ‘-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십시오’와 같은 구성을 취한다.

예15)

- a.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b. 과거 경력은 자영하던 사업, 근무하던 직장 등을 최근의 것부터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 c. 양식의 이름란에 원고의 경우에는 ‘원’에, 피고의 경우에는 ‘피’에 ○표를 하기 바랍니다.
- d. 뒷면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기입하십시오.

예15의 a, b, c, d는 각각 ‘의무,’ ‘서술,’ ‘기대,’ ‘명령’을 표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모두 ‘요청’이라는 동일한 소통 목적을 가지고 생산된 문장들로서 서식 작성에 대한 안내문이나 작성과 관련한 주의사항 혹은 유의사항으로서 열거된 사항들이다. 따라서 이 예들은 모두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소통맥락에서 거

의 동일한 소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결과 유사한 언표달성 효과가 기대된다. 연구에 참고한 작은 규모의 코퍼스에서 빈도는 높지 않으나 아래의 예16과 같이 ‘의무’를 나타내는 해라체 종결형의 요청문도 있다.

예16)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다음에 나오는 예17의 a와 b는 각각 명사형 어미 ‘-고’와 ‘명령’ 또는 ‘시킴’의 의존명사 ‘-고 것’을 취하는 구성으로 역시 요청의 화행을 수행한다.

예17)

- a. 주소는 기재를 생략함. 수신은 재판장 ○○○, ○○○검찰청 검사장 (지청장), ○○○경찰서장으로 기재함.
- b. 공적자술서 및 공적증명서에는 피의자의 국가보안법위반 범죄내용, 적용법조와 통보 또는 체포일시, 장소 및 그 경위(자수인 경우 포함)를 상세히 기재하실 것.

마지막 유형은 ‘행위명사’를 종결형으로 하는 형태로서 이러한 형태는 텍스트 구조가 가하는 공간적 제약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흔히 표 형태의 기재란 안팎에 사용되므로 간결한 표현에 대한 필요성이 문체 선택의 직접적인 동기일 가능성이 높다.

예18)

- a. 업무처리 지연 또는 수령 지체 사유 등을 기재
- b. 청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로 첨부

‘행위명사’만으로 이루어진 구성이 명령 또는 요청의 화행을 수행하는 예는 도로표지판 등 다른 장르에서도 발견된다. 예컨대 ‘서행(하시오)’ 또는 ‘좌측통행(하시오)’이 이러한 예에 해당된다. 이 때 ‘도로 표지판’이라는 장르와 그러한 장르가 관습적으로 갖는 소통 기능은 이러한 장르에 나타난 언어 형태가 ‘명령’의

화행을 수행하도록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명확해 진다. 아래의 예14는 ‘명령’이 주된 기능인 텍스트의 예로서 예컨대 부모가 외출을 하면서 자녀를 수신대상자로 하여 냉장고에 붙여둔 쪽지에서 발견될 수 있는 텍스트이다.

예19)

오늘의 할 일

1. 화초에 **물주기** (혹은 화초에 **물 줄 것**)
2. 욕실 **청소** (혹은 욕실 **청소할 것**)
3. 잔디 **손질** (혹은 잔디 **손질할 것**)

예19의 표현들이 수행하는 명령의 화행이 텍스트 수신자에게 생산자의 의도대로 인식될 수 있는 이유는 ‘-하다’형을 취할 수 있는 ‘동작’ 표현 명사가 문미에 위치하여 요청문의 표지(marker)를 형성한다는 점 때문만은 아니다. 예컨대 예20과 같이 어떤 차량을 홍보하는 소책자에서도 행위명사 종결형을 찾아볼 수 있다.

예20)

본 차량의 장점

1. 강렬한 파워가 느껴지는 고품격 디자인 **구현**
2. 음성인식 내비게이션 **장착**
3. 주행 안정성 **개선**

한국어 사용자라면 예20의 예문들이 ‘명령’이 아닌 ‘서술’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텍스트 생산자의 화용적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가를 결정하는 장르 관습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구 형태를 갖는 요청 표현에서 문장의 일부 요소가 생략된 것으로 본다면 예18의 예문을 아래 예21과 같이 합쇼체의 요청문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예21)

- a. 업무처리 지연 또는 수령 지체 사유 등을 기재(하십시오.)

b. 청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십시오.)

한편 텍스트의 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간결성이 요구되는 상황은 영어 서식에 서도 흔히 발견된다. 이 경우 한국어 서식에서와 마찬가지로 표현의 간결성을 위해 예22의 a, b와 같이 관사나 소유형용사 등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으며, 공손 표지(politeness marker)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예22)

- a. I entered without documents. **Explain:** _____ .
- b. I entered using a _____ visa....

(Specify type of visa)

반면 공간적 제약이 없는 안내문구 등 부속 텍스트의 경우 요청문은 ‘서법동사(modal verbs) (must/should) + 능동/수동의 원형부정사’의 구성과 명령형의 구성이 주로 발견된다.

예23)

- a. **Use** This form (Form EOIR-26) only to appeal a decision by and Immigration Judge.
- b. **You must** send the Notice of Appeal so that it is received by the Board within thirty (30) calendar days after....

또한 흔히 나타나는 경우라 할 수 없지만 예24와 같이 ‘요청’의 회행을 수행하는 평서형의 구성도 있다.

예24)

Requester completes this form and emails the completed form to:
cfc_transcripts@ao.scourts.gov.

이제까지 살펴본 한국어와 영어 법률 서식의 요청문 문체 관습을 토대로 요청

문 번역 실례에 나타난 화행 분석의 오류를 파악할 수 있다. 아래 예25의 a는 예11에서 살펴본 「민원신청서」의 요소인 ‘신청 민원’에 덧붙은 표현과 이에 대한 번역 실례로서 민원의 종류와 이에 대한 설명이 뒷면에 제시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b는 ‘특정 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라’는 명령의 화행을 수행하는 요청문이다.

예25)

a. ST: 뒷면 참조

TT: Referring to the back

b. ST: 출국가능증명신청의 경우 기재:

출국사유: 출국지: 출국예정일자:

TT: Filling out the blank in case of the Certification of Departure

Allowance

예25 a와 b의 원천텍스트 어구는 예18과 같이 행위명사를 종결형으로 하는 요청문으로서 번역자는 요청의 소통 의도를 갖는 문체의 관습이 원천문화와 목표문화에서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목표텍스트는 원천텍스트의 생산자가 의도한 명령 혹은 요청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텍스트 수신자가 오류를 파악하기 전에는 원천텍스트에서 의도된 언표달성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어휘 선택과 관련한 장르 관습과 공간적 제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예18은 이러한 장르 관습과 공간적 제약을 고려한 번역 예이다.

예18)

a. See reverse (for instructions/guidelines)/See instructions on reverse.

b. Specify[write in the box] if requesting Certificate of Permit to Depart.

예18의 a와 b는 텍스트 구조의 제약 때문에 간결함이 미덕으로 간주될 수 있는 번역 상황에서 영어 서식의 문체 및 어휘 관습에 따라 번역된 예이다. a의 괄호는 수신대상자가 소통 맥락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암시적 요소가 목표텍스트에서도 암시적 요소가 되거나 공간적 제약이 없을 경우 명시화될 수 있음을 보

여주며, b의 경우 역시 간결성을 위해 ‘you are’가 생략된 예이다.

이상과 같이 원천문화와 목표문화의 원문텍스트 표본에 나타난 언어 형태와 소통 기능 간 관계를 참고하여 검찰청 민원 서식과 이에 대한 영어 번역물의 기능상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한국어 서식에 대응되는 영어 번역물은 많은 부분에서 단어 대 단어(word-for-word) 치환 방식의 번역이 나타나며, 이 경우 번역은 해당 원천텍스트 요소와 동일한 화행을 수행하는 영어 원문텍스트의 표현 방식과 그 형태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였다. 본고에서는 이를 번역의 기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논하였다. 또한 축자적(literal) 방식의 번역으로 번역문의 길이가 길어져 글자 크기가 작아짐으로써 독이성(讀易性)이 저하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번역된 언어는 영어임에도 불구하고 텍스트 생산자와 수신자의 관계와 양자 간 거리에 대한 관점은 한국어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되어 번역의 기능성이 저하되는 예도 발견된다.

V. 결어

결론적으로 영어로 번역된 서식은 적지 않은 통사적 오류뿐만 아니라 소통 기능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 서식에 나타난 오류와 소통 기능상의 문제점은 국가기관으로서의 권위 및 위상과 관련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재번역과 외국인 전문가의 감수가 요구된다. 아울러 법률 서식과 같은 특수한 영역의 번역은 한국어 서식의 텍스트 구조와 언어 형태를 번역물에 그대로 복제하여 번역할 것이 아니라 서로 번역 등가적인 텍스트(translation equivalent texts)(각주 2 참조)를 동시에 한국어와 영어로 생산하여 영어 서식의 기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점도 번역물의 사용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본고의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사용한 한국의 법률 서식과 미국 연방정부의 법률 서식은 그 규모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규칙성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법률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원천 텍스트 어휘에 대한 맥락상의 등가적 용어를 발견하고 ‘명령’ 혹은 ‘요청’과 같은 특정한 화행을 수행하는 언어의 형태를 유형별로 분류하는 데만 참고하였다.

빈도나 분포와 같은 데이터는 더 큰 규모의 코퍼스를 이용한 양적 분석을 통해서 구해야 할 것이며, 본고에서 언급한 ‘빈도’는 간주관적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님을 밝혀 둔다.

본 연구는 번역 상황의 재구성, 원천텍스트와 소통 기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표문화 대응 장르의 언어 형태와 텍스트 구조의 특징 분석, 원천텍스트 요소의 재생(reproduction)과 변경(adaptation) 간 선택이라는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번역자가 원천텍스트와 목표텍스트의 존재 목적을 비교하고, 원천문화 오디언스(audience)와 목표문화 오디언스가 텍스트의 소통 기능이 구현되는 방식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어떻게 다른가를 충분히 고려한 후 원천텍스트 요소에 대한 취사선택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번역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김한식, 주진국, 정정림. 2008. 「대검찰청 연구과제 보고서: 외국인을 위한 수사·공판 서류 번역 및 통역 실태 조사 연구」. 서울: 한국외대산학협력단.
- 안상철, 최인철. 2006. 『영한대조분석』. 서울: 한국문화사.
- 정연일 옮김. 2006. 『번역학 연구의 길잡이』. 서울: 이지북스.
- (Williams, Jenny & Chesterman, Andrew. 2002. *The Map: A Beginner's Guide to Doing Research in Translation Studies*. Manchester: St. Jerome.)
- Hatim, Basil & Maison, Ian. 1990. *Discourse and the Translator*. London: Longman.
- Nord, Christiane. 1997.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Manchester: St. Jerome.
- Sager, Juan C. 1990. *A Practical Course in Terminology Processing*. Amsterdam: John Benjamin.
- Sager, Juan C. 1997. "Text Types and Translation". in Anna Trosborg. ed. *Text Typology and Translation*. 25-41. Amsterdam: John Benjamin
- Shuttleworth, Mark & Cowie, Moira. 1997. *Dictionary of Translation Studies*.

Manchester: St. Jerome.

Snell-Hornby, Mary. 1988/1995. *Translation Studies: An Integrated Approach*.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Varó, Enrique A & Hughes, Brian. 2002. *Legal Translation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Yule, George. 1996. *Pragmatics*. Oxford: Oxford UP.

인터넷 사이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Robert Deschene의 블로그 <http://massachusettsappellateattorney.com/?p=173>

[Abstract]

**Language Forms and Functionality of Translations:
Korean-into-English Translation of Legal Forms as a Case in Point**

Joo, Jinkook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very text has a set of conventional and culturally determined features that marks it as a text performing a certain communicative function. This set of standardized features, or genre conventions reflects the communication practices established through repetitive use of certain language forms with certain communicative functions. When a written form of communication takes place, the receiver expects the text to display a certain set of lexical, formal, and structural features, and the sender produces a text in such a way that it can meet those addressees' expectations. Therefore, these conventional features serve both as a constraint and as a guide in every communication process. This aspect of communication is a good reason why a translator needs to be very sensitive to the differences in the way communication is made successful in the source and the target cultures. Based on this observation, this article looks at the problems found in Korean-into-English translations of legal forms largely from a functional perspective. In so doing, a sample of original texts currently used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taken into account with a focus being laid on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forms and their communicative functions.

▶ Key Words: genre conventions, language forms, communicative functions, functionality, legal forms

주진국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강사

ke99@naver.com

관심분야: 텍스트 유형론, 담화텍스트론, 전문 문서 번역

논문투고일: 2009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 2009년 5월 23일

게재확정일: 2009년 6월 12일